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47

발의연월일: 2021. 12. 17.

발 의 자:전봉민·강기윤·김희곤

백종헌 · 서범수 · 안병길

양금희 • 이종성 • 정동만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3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 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3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 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6. 자살예방 연구·개발
- 7.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8.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을 "자살예방센터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

문 인력 양성"을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

- 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③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2조의3에 따른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의2(심리부검) (생 략)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2조의3에 따른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
	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u> <신 설></u>	제12조의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원
-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6. 자살예방 연구·개발
- 7.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8.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 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저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6. 자살예방 <u>전문 인력 양성</u>
- 7. (생략)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		
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u>있다.</u>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세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u>시 • 도지사</u>		
<u>자살</u>		
예방센터를		
1. ~ 5. (현행과 같음)		
6 <u>관</u> 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현행과 같음)		
② <u>지방자치단체</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③ <u>지방자치단체</u>
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u>지방자치단체</u>
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	④ <u>지방자치단체</u>
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	
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u>.</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